

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8일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인터넷 초창기에 도입하였던 도민 이메일시스템 폐기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,
-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 운영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항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- 전자우편 ID 보급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3조, 제14조)
-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항목의 변경 및 추가(안 제6조, 제12조 등)
- 전자민원 창구 운영 항목의 추가(안 제8조)
- 인터넷 민원접수 항목의 변경(안 제9조)
-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항목의 변경(안 제 16조, 제18조 등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초창기에 도입하였던 도민 이메일시스템 폐기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,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 운영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함.
- 주요 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“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”를 “도민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”로 변경하고,
 - 안 제3조와 제14조에서는 전자우편 ID 보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,
 - “인터넷민원”을 현재의 시스템에 맞게 “전자민원”으로 변경하고,
 - 제16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를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음.
- 이 개정조례안은 인터넷초창기에 도입하였던 이메일시스템을 폐기하고, 현재 시스템 운영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다만, 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제8호의 “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”를 “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”로 변경할 경우 도민의 게시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제재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.
- 또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

비기준에 맞춘 반면, 개정하지 않는 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.

- 제2조제1호, 제2호 및 제8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- 제2조제5호, 제6호 및 제7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한다.
- 제6조제2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하나”로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의 제8호 중 “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”을 “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”로 한다.
- 제13조제3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- 제13조의2제3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- 제5장의 장제목을 삭제한다.

붙임 : 충청북도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